

이동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전			
4일 전 ~ 3일 전		2일 전 ~ 1일 전	
-1점		-2점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3점	-4점	-5점	-7점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Q&A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더라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Q.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합니다.

Q.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 1661-9361
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개시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보육의 첫걸음

시간제 보육 사업



아이에게는 든든하게 부모에게는 편안하게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안내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의 경우, 서울시(성북구, 은평구, 강서구)에서 운영 중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맞벌이형' 서비스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이용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증빙서류

-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 ※ 맞벌이형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도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 후 유효기간 확인은 [아이사랑보육포털 ▶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에서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서류 중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아래 '맞벌이 가족' 또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확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보험 가입자) 아래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상기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류 중 1부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위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로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맞벌이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학교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기타 양육 부담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 입증 서류로 아래의 서류 중 1부 • 직업훈련기관 입소 증명 서류 • 학원 수강증 • 기타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접, 서류접수확인서)
장기 입원 등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서류 중 1부 • 진단서 • 입원확인서